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의안 번호	18680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이주희 · 최혁진 · 윤종오
김선민 · 백선희 · 백승아
손 솔 · 진성준 · 김 윤
전종덕 · 채현일 · 권향엽
김한규 · 이용선 · 김준환
박정현 · 남인순 · 최기상
이학영 · 김기표 · 장종태
한창민 · 김태년 · 김 현
백혜련 · 최민희 · 고민정
김재원 · 박지혜 · 김남희
이용우 · 이성윤 · 박지원
황명선 · 정혜경 · 강준현
박해철 · 이건태 · 소병훈
서삼석 · 이강일 · 송옥주
문진석 · 최형두 · 서영교
김주영 · 어기구 · 정춘생
용혜인 · 강경숙 · 조정식
추미애 · 박희승 · 전진숙
이수진 · 김남근 · 임미애
서미화 · 이광희 · 전현희
의원(60인)

주 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헌법가치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하며, 고용·교육·행정 등의 각 영역에서 여성에게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 선진국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제지표들은 우리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101위(2025년)로 오랫동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별임금격차 관련 통계에서도 우리나라는 33년이 넘도록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성별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과 예산 수립의 전제조건인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역시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은 27.5%(2026년 기준)이나 22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1.4%(295명 중 63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며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성평등 사회의 실현은 헌법에 아로새겨진 국민과의 약속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임과 동시에 이미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급히 달성해야 할 국가적 당면과제입니다. 성평등은 특정 성별이나 정파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구체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와 여성의 대표성 향상을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선거 시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추천하도록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여성비율도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성희롱 및 성폭력, 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표현,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성평등 관련 현안에 대한 초당적 소통을 원활히 하고 성평등 입법과 성인지 예산 심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성평등 종합계획을 4년 마다 수립할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성평등 관련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성평등 국회 운영을 제도화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 보좌직원 및 국회 직원들이 성인지적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인권센터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직원을 확충하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한다.

제안이유

국제의회연맹(IPU)은 2012년 퀘벡에서 개최된 127차 총회에서 「성인지 의회를 위한 행동강령(Plan of Action 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국제의회연맹에 따르면 성인지 의회(Gender-sensitive Parliament)란 성평등 원칙, 즉 의회의 조직 및 과정에 대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의회의 구성과 조직, 운영, 방법 및 활동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이

해와 욕구에 반응하는 의회임.

의회를 보다 성인지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제의회연맹은 ① 여성 의원수 확대 ② 성평등 입법 및 정책 강화 ③ 모든 의회 활동의 성주류화 ④ 성인지적 조직 운영 및 문화 개선 ⑤ 성평등 실현을 위한 남녀의원의 책임 공유 강화 ⑥ 정당의 성평등 역할 제고 ⑦ 의회 직원의 성인지성 및 성평등의식 강화 등 7개 행동강령과 구체적인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회원 국가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국가의 의회에 행동강령의 실천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2030년까지 성인지 관점에서의 의회활동 및 조직운영에 대한 감사의 실시를 요청한 바 있음.

이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도 2013년 “국회와 성평등: 입법부에서의 성주류화(Parliaments and Gender equality : Gender Mainstreaming in Legislature)”를 통해 3가지 목표 즉, 첫째 동등한 대표성(gender parity) 획득, 둘째 차별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입법 실현, 셋째 의회조직을 좀 더 평등한 기구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음.

2012년 이후 국제사회는 성평등한 국회를 통해 성평등한 입법정책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성평등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낮은 편에 속함. 특히 고용영역에서 여성의 불평등을 극명히 보여주었고, 디지털 전환을 통한 민주주의의 심화를 기대했던 여성들은 빛의 속도로 퍼져가는 혐오와 비하, 거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마주하게 되었음. 그럼에

도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위한 정치적·경제적 의지는 상대적으로 미약했음. 이에 우리 사회가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음. 국회의 모든 영역을 성평등하게 구성·운영하는 모범을 보이고, 모든 의제에 기본적으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성평등 국회의 실현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건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수 요건임을 잊지 말아야 함.